

學校教育環境改善 支援計劃

생활복지국
(가정복지과)

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

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,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학생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,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로 가꾸어 영원히 머물고싶은 「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마포 전설」에 구의 역량을 다하고자함.

□ 事業概要

- 사업기간 : 2003년 1월~12월
- 지원근거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 -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
- 지원대상 학교 및 사업
 - 지원대상 학교 : 관내 고등학교이하 학교 총 66개교(공립 32, 사립 34)
 - 초등학교 : 20개교(공립 19, 사립 1)
 - 중 학교 : 12개교(공립 7, 사립 5)
 - 고등학교 : 8개교(공립 1, 사립 7)
 - 특수학교 : 2개교(공립)
 - 유 치 원 : 24개원(공립 3, 사립 21)
 - 지원대상 사업 :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열거된 사업
 -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 -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
 -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 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 -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 - 기타 지역사회개발 및 중·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
○ 지원방법(절차)

- 2003년도 지원계획수립 각 학교 시달(구청장)
- 학교환경개선보조금 지원신청(각 학교장)
- 각 학교환경개선보조금 지급심의(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)
- 환경개선보조금 각 학교 지급(구청장)
- 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사업완료 정산보고(각 학교장)
- 지도·감독 및 정산서 수합보고, 차기년도 계획수립 반영(구청장)

□ 細部推進計劃

- 2003. 1월 : 학교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각 학교 사업신청 안내
- 2003. 2월~3월 : 각 학교 사업신청 및 구 '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'구성(조례제정) 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심의 결정
- 2003. 3월~4월 : 각 학교별 사업비(보조금) 교부
- 2003. 4월~11월 : 각 학교 사업시행 및 사업 정산보고
- 2003. 12월 : 지도 감독 및 정산서 수합 결과보고

□ 所要豫算 : 1,000백만원(구비)

- 예산과목 : 사회개발비, 사회보장비, 가정복지, 자체사업, 자치단체등 이전,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(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)

□ 기타 行政事項

- 보조사업 집행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조 우선순위 등을 학교개방화를 고려해 집행
 -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
 - 담장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
 -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고, 학교도서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등
-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집행